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상별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59호

상별 규칙 일부 개정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상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별표 1의4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양정기준 및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